

# 문학으로 읽는 인권\*

-의의, 사례, 방법론-

## Menschenrechte in der Literatur

- Sinn, Fall und Methode -

이 계 수\*\*

Yi, Kyesoo

### 목 차

- I. 굳이 문학으로 인권을 공부해야 하는가? III. 문학, 인권, 읽는다는 것에 대하여  
II. 사례연구 -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의 권리 IV. ‘커머닝’으로서의 독서 활동과 ‘문학의 정치’

1970년대 이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법과 문학’이 비판법학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후 법과 문학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국 내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학과 인권을 결합하는 시도가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연구 흐름에 자극을 받아 이 글에서는 문학으로 인권을 읽어내는 것의 의의와 방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의 권리’라는 소재를 통해 ‘문학으로 인권 읽기’가 실제로 효과적인 인권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론에서는 ‘동료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작품의 비판적이고 인권적인 독해 행위를 일종의 ‘커머닝’으로 이해하며, 책 읽을 시간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법과 문학, 문학으로 읽는 인권, 문학의 권리, 인권교육, 시민교육, 군인 인권 교육, 국방부 금서 사건, 성인지 감수성, 문학의 정치

<https://doi.org/10.35148/ilsilr.2024..57.227>

투고일: 2024. 3. 29. / 심사완료일: 2024. 4. 22. / 게재확정일: 2024. 4. 29.

\* 이 논문은 필자가 담당하는 건국대학교 심화교양 수업인 ‘문학으로 읽는 인권’의 2024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I. 굳이 문학으로 인권을 공부해야 하는가?

### 1.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의 목표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는 인권 교육은 대부분 인권 일반론이거나(예컨대 ‘현대사회와 인권’), 법학 기초교육(예컨대 ‘국제사회의 인권과 법’)의 형태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과 함께 인권을 문화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sup>1)</sup>

문학작품 – 특히 동시대 한국 문학 작품을 주된 소재로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을 선택하여, 이들 작품에 담긴 상처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인권과 인권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것, 이를 통해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인권 감수성을 기르며 연대를 배우는 것, 나는 이것이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포스터(E. M. Forster)는 1910년에 발표한 <하워즈 앤드>에서 혼외 임신한 헬렌 술레겔이 당하는 부당한 사회적 취급과 마거릿이 헬렌에게 느끼는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sup>2)</sup>

“마거릿의 분노와 공포가 순간순간 커져 갔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대로 헬렌을 단정하던 말인가!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과학의 이름 아래 어떤 부조리가 숨어 있는가! 늑대 무리는 헬렌의 인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마거릿은 술레겔 집안 전체가 위협당하는 느낌을 받았다.”<sup>3)</sup>

1) 김경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 – 문학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제14권,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52-153쪽.

2) 앤드루 클레팜, 이지원 옮김, *인권, 교양서가*, 2019, 251쪽. 최근의 한국 작품으로는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퍼플>이 연대의식에 기반한 서사 전략을 구사한다. 병원과 그 주변 공간을 중심으로 수렴되는 동시에 확산되는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 마지막 장 ‘그리고 사람들’에서 ‘나’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서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한 극장에 모인다는 설정, 화재가 나자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설정이 그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유가족을 만들지 않았다.”(389)는 결말의 문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재난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관계와 협력, 상호의존성에 있다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김양선,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비교한국학*, 제29권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24-25쪽.

3) E. M. 포스터, 고정아 옮김, *하워즈 앤드*, 열린책들, 2010, 374쪽.

이 대목은 인권 존중의 요구란 그때나 지금이나 불의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감정에  
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sup>4)</sup>

교양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시민교육이다. 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도덕적 개인을 넘어 정의로운 시민이 되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sup>5)</sup> 인권교육은  
그 길을 보여주는 데 아주 적합하다.

시민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시민권(citizenship) 보유자로서의  
시민이다. 다른 말로 국가시민, 즉 공민(Staatsbürger)이다. 둘째, 부르주아지로서의  
시민(Bürger als Bourgeois)이다. 셋째, 소비자라 다른 품성을 가진 ‘성찰적’ 존재로서  
의 시민이다.

우리가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을 말한다면, ‘시민’이 누구를 말하는 지를 분명  
히 해야 한다. 예컨대 시민을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면 시민교육의 중심은 공민교육  
에 놓인다. 흔히 말하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 되겠다.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 대표적이다. 반면, 시민을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면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각종 (자기) 권리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교육은 헌법이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민법이 주로 담당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세 번째 의미’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내가 하고 싶은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의미는 이하에서 차차 밝히겠지만, 일단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소비자 제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감정·심성의 인권·법 공부라고 해두자.

## 2. ‘악의 평범성’과 사유·공감의 능력

‘대학의 교양교육이 위기다.’ 매년 대학서열이 발표되고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된  
1990년대 이후 이런 진단은 일상이 되었다. 교양교육의 역할, 목적, 가치에 대한 진지  
한 논의가 사라지는 한편, 취업적합성에 맞춘 실용교양교육이 학생들의 인기를 끈다.

그러나 우리는 리버럴 아츠(artes liberales)로서의 교양교육을 내다 버리면 안 된다.  
이 교육의 핵심은 사유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인권교육도 이것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인권 감수성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

4) 앤드루 클래팸, 이지원 옮김, 앞의 책, 같은 곳.

5) 키스 바튼/리칭 호, 웅진환/장유정/김진아 옮김, 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정의와 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역사비평사, 2023.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법 지식 위주의 강의, 모든 것을 실정법적으로 사고하는 한계에 갇힌 인권(법) 교육을 넘어서 인권을 우리 삶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수업이 필요하다.

무엇이 법인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올바름’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올바른 길이 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부, 그런 공부를 대학의 인권수업이 감당해야 한다.

한나 아렌트가 한 말,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아렌트는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히틀러 평전>을 쓴 독일 언론인 요아힘 페스트와 한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히만은 꽤나 지성적이었지만 (...) 마치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평범성의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깊은 구석이라고는 아예 없어요. 악마와 같은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겪는지 상상조차 꺼리는 거부감이 있을 뿐이죠.”<sup>6)</sup>

아이히만은 “지옥 밑바닥에서 온 야수”,<sup>7)</sup> “잔인한 사람”<sup>8)</sup>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sup>9)</sup> “말도 안되는 무사유”<sup>10)</sup>의 인간이었다. 그는 “세계를 자신 말고 타인의 관점으로는 보지 못했고, 특히 자신이 칭찬하면서 함께 일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sup>11)</sup> “죽도록 일하다가 독가스로 살해되어 소각될 준비를 하던 생명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sup>12)</sup> 이것이 그가 책임져야 할 극단적인 악의 평범성이다. 이 악이 우리와는 무관할 것인가? 이 수업에서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다.

6)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난간 없이 사유하기 - 한나 아렌트의 정치 에세이, 문예출판사, 2023, 402쪽.

7)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위의 책, 398쪽.

8)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위의 책, 400쪽.

9)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위의 책, 403쪽.

10)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위의 책, 404쪽.

11)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위의 책, 33쪽.

12)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위의 책, 27쪽.

### 3. 문학 텍스트는 인권적인가?

그렇다면, 인권교육의 재료가 되는 문학텍스트는 모두 인권적인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때때로 작가는 알면서 혹은 무의식 중에 현실의 각종 차별을 작품 속에 그대로 녹여 넣는다. <너도 하늘말나리아>, <소희의 방> 등으로 유명한 이금이 작가는 2004년 발표한 청소년 소설 <유진과 유진>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건우와 더 친해져 손을 잡고 뽀뽀하는 걸 상상하곤 한다. 그 상상을 하면 혼자 있는 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건우가 손을 잡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소리는 세 번은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들은 너무 쉬운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sup>13)</sup>

그러나 강조한 부분은 2020년 개정판에서 삭제되고 새롭게 쓰였다.

“(...) 건우가 손을 잡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소리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린 거라고 했다.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싫으면 말고.”<sup>14)</sup>

이러한 고쳐쓰기는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문학이 양성평등, 인권감수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고전이라 불리는 문학작품에도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하여 문제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 것을 비평적으로 읽어내거나 혹은 독해해 내는 눈을 기르는 교양수업이 많아진다면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언론보도나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sup>15)</sup>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사례로 들어보자.

이 소설의 스토리는 간단하다. 1936~1939년 벌어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반파시즘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 오웰처럼 개인 자격으로 참전한 미국인 로버트 조던이 산속에서 게릴라들과 사흘 밤낮을 함께 지내며 기습 공격을 퍼 다리를 폭파하

13) 이금이, 유진과 유진, 푸른책들, 2004, 175쪽.

14) 이금이, 유진과 유진, 밤티, 2020, 180쪽.

15) 성희롱 사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다음 판결을 참조할 것.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는 이야기다.<sup>16)</sup> 단 3일간의 사건을 번역본으로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담으려다 보니 이야기는 다리 폭파라는 중심 주제 외에 또 다른 중심 테마인 조던과 마리아의 연애를 묘사한다.

마리아는 스페인 내전 중에 파시스트에 의해 부모가 처형당하고 자신은 강간당한 여성이다. 머리로 뻑뻑 깎인다. 강간피해자이다. 머리를 깎인다는 것은 존엄을 침해당했다는 의미다. 마리아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대략 3개월 정도 산속에서, 필라르의 보살핌을 받으며 게릴라 대원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런 여성과 조단이 처음 만나는 순간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한다.

“얼굴이 예쁜데.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지 않았더라면 더 예뻐서 텐데. (...)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도 함께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다 두 손을 얹전히 포개어 놓았다. 그녀가 무릎 위에 두손을 가지런히 놓고 앉자 바지의 열린 아랫단으로 길고 갈끔한 다리가 비스듬히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회색 셔츠 밑으로는 자그마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가슴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로버트 조던을 그녀를 볼 때마다 목구멍이 꼭 막혀 오는 것을 느꼈다.”<sup>17)</sup> (강조는 필자)

둘이 만나는 첫 장면에서 이미 조던은 마리아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다.<sup>18)</sup> 마리아를 강간한 파시스트들에게 분노한 조던은 그 파시스트 남성들과 다른 존재일까?

특히 중요한 것은 조던이 겉으로는 마리아의 보호자로서 행동하지만 마리아의 상처에 대해서는 극히 둔감하다는 점이다.<sup>19)</sup> 마리아는 오랫동안 입도 열지 않았다.<sup>20)</sup>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게릴라들에 의해 처음 구조될 당시 마리아의 정신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

“기차 습격 당시 우리가 그 처녀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아주 이상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내내 울기만 했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물을 뒤집어쓴 개처럼

16) 백민석, 헤밍웨이, 아르테, 2018, 226쪽.

17)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종인 옮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상), 열린책들, 45쪽.

18) 高野泰志, “マリアの凌辱 — 『誰がために鐘は鳴る』における性と暴力”, 九大英文学 第51号, 九州大学大学院英語学・英文学研究会, 2009, 27頁.

19) 高野泰志, 上掲論文, 29頁.

20)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종인 옮김, 앞의 책, 54, 276쪽.

부들부들 떨어졌어요. 좀 나아진 것은 최근에 와서예요. 요즘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요.”<sup>21)</sup>

그런데도 작가는 첫날 밤에 두 사람이 동침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입으로 “우리가 사랑을 함께 불태운다면 겁탈당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sup>22)</sup>라고 말하게 한다. 어쩌면 작가는 강간당한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남성중심의 문학계에서 이런 일은 비밀비재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문학에서 여성 혹은 여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일찍 폐병으로 죽는다. 이것은 ‘아름다운’ 여성의 ‘늙음’에 대한 하나의 혐오로 읽을 수 있다.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이 그 점을 잘 지적하였다.<sup>23)</sup> 소설의 시선은 오랫동안 남성의 그것이었다.<sup>24)</sup> 그 점에서 D. H. 로렌스가 <채털리 부인의 연인, 1928>에서 여성인 코니로 하여금 남성인 펠러즈의 나신(裸身)을 바라보게 한 것은 가히 시선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25)</sup>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캐치해 내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현실을 반영한 것이건 아니면 작가가 반면교사의 의미로 집어넣은 것이건, ‘훌륭한’ 문학 텍스트들은 읽어 낼 수 있는 인권의 관점이 반드시 있다. 이 정도면 ‘문학으로 읽는 인권’ 공부의 필요성은 얘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반신반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싶다.

21)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종인 옮김, 위의 책, 54쪽.

22)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종인 옮김, 위의 책, 124쪽.

23) 수잔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특히 65-66쪽.

24) “19세기의 지배적 전통인 사실주의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시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 시각의 대상으로서의 육체는 남성의 육체와 여성의 육체가 모두 포함되지만 시각 그 자체는 전적으로 남성적인 특권이다. 따라서 그 시각이 매혹당하는 대상은 여성의 육체에 국한된다. 이러한 문화적 모델은 그 당시 너무도 지배적인 것이어서 심지어는 여성 작가들까지도 이러한 시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실제로 사실주의적 전통에 있어 시선은 결코 중성적인 것이 아니며 매우 성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179-180쪽.

25) D. H. 로렌스, 이인규 옮김,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민음사, 2003, 142-143쪽, 195쪽. 반면 케이트 밀렛은 작가인 로렌스가 영리하게도 “여성의 의식이라는 수단”, “여성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만, 결국 그가 전달하고자 한 것은 “여성은 수동적이며 남성은 능동적”이라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지시에 따른 “남성적 메시지”라고 비판한다. 케이트 밀렛, 김유경 옮김,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466-469쪽.

## II. 사례연구 -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의 권리

### 1. 국방부 금서 사건과 권리를 위한 투쟁

어디선가 소문이 돌았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주동해서 수상한 책들을 군대로 보낼 것이라고. 실체 없는 그 말에 국방부 장관은 바람처럼 칼을 뽑았다. 2009년의 국방부 금서(禁書) 사건이었다. 이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민주공화국의 군인들이 있었다. 몇몇 군법무관들이었다. 그들은 장관의 명령·지시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았다. 심사숙고 끝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써 시작된 권리/법을 위한 투쟁(Kampf ums Recht)은 10여 년에 걸쳐 크게 세 개의 최고법원 판례를 만들어 내고 끝났다.

군법무관들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런 일을 감행했던 군법무관들에 대한 장관의 응징에 불복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대법원판결,<sup>26)</sup> 그리고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의 대법원판결.<sup>27)</sup> ‘길게는 14년에 걸친 소송을 거쳐 복직한 군법무관’<sup>28)</sup>은 그사이 배추를 키우는 농부가 되었다는 전언도 있었다. 세상은 이런 소수의 “반항하는 인간”(카뮈)에 의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군법무관들이 주장하고 최고법원이 검토했던 법률의 문장을 모두 복기(復記)할 수는 없다. 나는 ‘독서 할 권리’를 주제로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의 권리를 말해보고 싶다.

26) 대법원은 육군법무관이었던 원고가 동료 군법무관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 지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처분된 사건에서,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여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 청구 전에 군 내부의 사전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2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손해배상].

28)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정년 연장돼야”...14년 소송 끝 현역 인정, 경향신문, 2023. 4. 6. 참조.

## 2. 문학의 권리

그때는 군인인권법, 정확하게는 군인복무기본법이 없던 시절이었다. 군인복무규율이라는 헌법적 근거가 모호한 규범(대통령령)이 군인의 의무를 규율했다. 법령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못박고 있지만, 군인도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말을 얼버무렸다. 군인이기에 이것은 정당화되었다. 이것을 법학에서는 특별권력 관계라고 불렀다. 군인에게 인권이라니. 국방부 급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견은 앵무새처럼 이 논리를 반복했다. 그러나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공현, 송두환)은 군인에게도 “책 읽을 자유”, 즉 독서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군인이라고 해서 야전교범(Field Manuals, FM)만 읽으란 법이 있냐는 거다.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 및 이 사건 지시는 군인들이 책을 읽을 자유, 즉 자유롭게 읽을 도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도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즉 독서는 사람이 그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유롭게 사상을 형성해 나가며 그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긴요한 수단이며, 또한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책 읽을 자유’는 단순히 ‘알 권리’의 문제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제19조), 학문의 자유(제22조) 및 행복추구권 등 정신적 자유의 핵심영역에 위치하는 것이고, 정신적 자유의 최대한 보장은 우리 헌법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의 전제이기도 하다.”<sup>29)</sup> (강조는 필자)

나는 이들의 주장을 문학의 권리로 확장하고 싶다. 군인에게는 문학의 권리가 있다. 문학의 권리라니? 그렇다. 문학의 권리는 ‘군인’, ‘인권’, ‘교육’의 의미를 되묻기에 좋은 화두이다.

## 3. 군인 인권 교육의 새로운 길

여러 노력 끝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게 의무가 부여되었다. 군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중 하나

29)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등].

다.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동법 제38조 제1항)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3항).

군은 그 누구보다 명령을 따르는 조직이고, 법률의 명령이니 따르긴 한다. 군의 인권교육 실적은 언제나 거의 100% 수강 완료로 수렴한다. 수치와 통계만 보면 놀라운 성과다. 그럼 이제 인권친화적인 군대가 되었을까? 사실 인권친화적 군대라는 말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 말을 들을 때 느끼는 위화감은 마치 생태주의자들이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것과 유사하다.

아무튼, 인권의 인지적 측면, 지식적 측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일까?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인권 감수성이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군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더는 상명하복의 전쟁 기계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전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상호존중이 있어야 한다. 독일 헌법과 독일 군인법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인권을 헌법적으로 표현하면 첫째가 존엄이다. 존엄의 의미를 독일 헌법은 ‘상호존중’이라고 말한다.<sup>30)</sup> 독일 군인법(*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은 이를 받아 “전우애”라는 표제 하에 그 상호존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독일연방군의 단결은 본질적으로 전우애에 기반을 둔다. 전우애에 의하여 모든 군인은 전우의 존엄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고 전우가 궁지와 위협에 처하였을 때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상호 승인과 타인의 가치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포괄한다. (강조는 필자)

30) 독일 통일 시기 아래로부터의 헌법제정 운동을 진행한 ‘독일의 모든 주(州)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평의회’(Kuratorium für einen demokratisch verfassten Bund deutscher Länder)는 새로운 통일헌법초안(1991년)을 발표했다. 이 헌법초안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제3문(밑줄)을 추가하였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상호 승인한다.” 이러한 문구가 없어도 인간의 존엄 조항은 ‘모든 법질서에 적용되는 기초가 되는 규범’(Fundamentalnorm)이므로 당연히 밑줄 친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안은 이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초안의 전(全) 조문은 다음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Bernd Guggenberger/Ulrich K. Preuß/Wolfgang Ullmann, *Eine Verfassung für Deutschland: Manifest Text Plädoyers*, München, 1991, 21-98쪽. 이 주제에 관한 필자의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계수,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민주법학 제6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1-35쪽.

전우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열려야 한다. 문학을 읽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어도 시도는 해보아야 한다. 인권교육자가 장병들 앞에서 인권 목록을 읊어주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읽어주면 다행이다. 인권교육이라 쓰고 군법교육이라고 읽는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시간에 쫓기는 장병들의 시간을 쥐어짜서 몇 시간짜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동료전사로서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게 가능해지면 인권교육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sup>31)</sup>

구체적으로 병사들이 군대 인권과 관련된 소설 등 문학책을 읽고, 인권 강사 혹은 독서모임을 이끌 역량이 되는 병사의 지도 아래 함께 책 내용을 토의해 보는 식의 제도 설계를 해볼만 하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병사(‘소양병사’)가 소대 단위 혹은 중대 단위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병의 자대배치에서도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혹은 초급 장교 중에서 문학과 인권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군인은 국가 권력 자체이면서 그 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민주공화국을 방어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국가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독일의 입법자는 군인 스스로가 그들이 방어해야만 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경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최소한으로만 규정하고, 정치적 활동이 군대의 효율성에 저해되지 않는 한 군인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며, 나아가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기까지 한다.<sup>32)</sup>

공화국은 정치가 군주의 것, 특정집단의 것에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에 탄생했다. 공화국은 정치와 비정치를 구분하고, 특정집단에게는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을 허용하지만 다른 특정집단에게는 철저한 비정치를 강요하는 ‘정치독점’을 거부한다. 공화국(republic)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것(res publica), 즉 공물(公物)이다.<sup>33)</sup> 그런 곳에서 어떤 책은 읽을 수 있고 어떤 책은 읽을 수 없다면, 혹은 어떤

31)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Georg Nolte(Ed.)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Berlin, 2003, 77-83쪽.

33) 이계수,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제2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333쪽.

주제는 토의할 수 있지만 어떤 쟁점은 말도 못 꺼내게 한다면, 이 군인들이 과연 공화국을 지킬 수 있을까? 미얀마의 군인들,<sup>34)</sup> 광주의 계엄군처럼 공화국의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 III. 문학, 인권, 읽는다는 것에 대하여

#### 1. 문학이란 무엇인가?

독서할 권리, 문학의 권리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은 나름 설명한 거 같다. 그렇다면 이제 문학, 인권,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지 말해보자. 시나 소설만이 문학인가? 그렇지 않다. 문학의 범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거나 좁을 수 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낭만주의자들은 시만이 창조적 혹은 상상적 작품으로서 문학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했다.<sup>35)</sup> 그러나 요즘의 편집자들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세계 문학전집에 포함시킨다.<sup>36)</sup>

학문세계에서 문학으로 연구되는 작품의 다수는 처음부터 문학으로 읽히도록 ‘지어졌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작품도 많다. 처음에는 역사서나 철학서로 등장했지만 그후 문학으로 평가되는 작품도 있다. 처음에는 문학으로 읽혔지만 시간이 지나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문학이었던 텍스트,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성을 획득한 텍스트, 원래 의도와 달리 문학으로 통용되는 텍스트.<sup>37)</sup>

이처럼 어떤 텍스트가 문학으로 포섭되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문학의 범주를 기술(記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34) 한겨레신문, 황준범, “미얀마 탈영 장교 ‘군, 사회와 단절돼...시위대를 범죄자로 봐’”, 2021. 3. 30, 16면.

35) 테리 이글턴,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문학이론입문, 창비, 1989, 28쪽. 이글턴의 이 번역서 인용에서는 원저자의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참고하여 한국어 번역본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テリー・イーグルトン, 大橋洋一(訳), 文学とは何か—現代批評理論への招待(上/下), 岩波書店, 2014.

36) 민음사는 세계문학전집 94권에 이 책을 배치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장희창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민음사, 2004.

37) 테리 이글턴,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앞의 책, 17쪽.

기분따라 아무거나 문학이라고 호명해서 될 일도 아니다. 문학의 범주가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것은 맞지만, 그 가변성이 문학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는 개인들의 기분에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가치판단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단지 개인의 취향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사회집단이 다른 사회집단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여러 전제를 가리킨다.<sup>38)</sup>

사정이 이러하므로, 나는 ‘문학으로’ 읽는 인권이라는 이 수업에서 사용할 문학의 개념을 나 나름대로 정의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 기분 따라 아무렇게나 정한 것도 아니다. 내가 이 수업을 위해 선택한 문학작품들은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해 있고, 내가 체득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당연히 반영한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 ‘인권’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수업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소격효과(疏隔效果, *Verfremdungseffekt*)를 일으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왔던 일상을 다시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언어 혹은 그 언어들의 집합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문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권에 관해 각성하게 만드는 글이 있다면 그것이 소설이 되었건 시, 연극, 자서전·일기, 여행기, 비평, 역사서술이 되었건 그들 모두를 나는 문학으로 포섭할 것이다.<sup>39)</sup>

1999년 4월, 독일 전역에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소보 전쟁에 반대하여 신문지상에 반전과 탈영을 호소한 격문을 게재했다. 이에 독일 검찰은 독일 전역에서 그들을 범죄행위 선동죄(독일 형법 제111조)로 기소했다. 그때 그 수많은 형사사건 중 하나가 베를린 티어가르텐 구(區)법원에서 심리되었는데, 동 법원의 리클레테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선고를 내리며 담담히 그 이유를 설시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나의 친구 마틴 쿠차(Martin Kutscha) 교수는 이 판결문을 내게 소개하면서(2000년 7월 베를린), 이 얼마나 아름다운 판결문인가 하며, 감탄했다.<sup>40)</sup> 지금 다시 이 판결문을

38) 테리 이글턴,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위의 책, 26쪽.

39) 한국 고전문학사 연구자는 ‘비문’(碑文), ‘편지’, ‘논설’, 어떤 사실을 해명한 글인 ‘변’(辯), 책 앞에 붙이는 ‘서문’(序文), 글씨나 글의 뒤에 붙이는 ‘발문’(跋文), 묻고 답하는 ‘문답’(問答), 인물의 삶에 대한 기록인 ‘행장’(行狀)이나 ‘전’(傳)과 같은 다양하고 많은 글쓰기들을 문학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나아가 글로 된 문학만이 아니라 구전문학(口傳文學)까지도 문학으로 간주한다. 박희병, 한국고전문학사 강의 1, 돌베개, 2023, 19-20쪽.

40) 나는 이 판결문의 전문을 번역하여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이계수 번역, “외국판례소개: 국민의

읽으니, 이 판결문이 문학작품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문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시나 소설만 문학이라고 단정짓지는 말자. 특히 이 수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수업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읽게 될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생각해보자. 어떤 이들은 증언록도 문학인가, 라고 반문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널리스트로는 처음으로(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1970년대 중후반부터 해온 작업의 결과물을 흔히 ‘목소리 소설’ 5부작이라고 한다.<sup>41)</sup> 그런 그이의 저작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바로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이다.<sup>42)</sup>

저널리스트 알렉시예비치는 그저 녹음하고, 받아적는 일만 한 것이 아니다. 그이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이 고통을 겪으며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좇으려고 했다. 또한 그 ‘인간’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 자신의 말을 받아 적고, 그 사람 자신만 쓸 수 있는 텍스트를 받아 적었다.<sup>43)</sup> 그이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의 침묵도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도 침묵도 나에겐 모두 텍스트다.”<sup>44)</sup>

알렉시예비치가 받아 적은 그 말과 침묵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그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쟁이 삼켜버린,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목소리지만, 이런 글을 읽으며 나는 여성은 물론 소년병, 탈영병, 포로/수용자들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희생되는 약자들을 떠올렸다. 이런 것이 문학의 힘이다. 어떤 글이 독자의 상상력의 세계에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 글을 두고 문학이라고 부르겠다.

최근에 안네 프랑크의 <안네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원래 남의 일기는 어떤 의미

---

이름 - 독일 판례”, 민주법학 제2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362-375쪽.

41) ‘목소리 소설’ 또는 ‘다성악 소설-고백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되는 작가의 5부작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1985/1998), <마지막 목격자들>(1985/2007), <아연 소년들>(1991), <체르노빌의 목소리>(1997), <세컨드 핸드 타임>(2013)이다. 팔호 안의 숫자 중 뒤의 것은 개정판이 나온 해를 표시한다. 예컨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초판인 1985년 판에는 검열 혹은 작가의 자기 검열에 의해 삭제된 부분들이 많았다.

42)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43)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위의 책, 36쪽.

44)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위의 책, 34쪽.

에서건 읽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읽기가 허용된 특별한 텍스트라면, 그 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안네의 일기>를 읽으며 나는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 프리모 레비의 기록은 또 어떤가?<sup>45)</sup>

모든 문학작품은 그것을 읽는 사회에 의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쨌건 새롭게 쓰여진다. 실제로 다시 쓰기(re-writing)를 수반하지 않는 읽기란 있을 수 없다.<sup>46)</sup> 이 수업에서 우리는 모든 작품을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고 그것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새로운 다시 쓰기의 대상이 되는 글, 문장들에 대해 모두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테리 이글턴이 말하듯이, 여러 문학 텍스트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의 출신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문학으로 대우하고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이다.<sup>47)</sup>

## 2.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온갖 권리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건 내 권리야’ 하고 말하며 ‘법대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1989년 이후의 세계에서 권리들은 확장되었으며, 일상적 삶의 거의 모든 부분과 관련된다. 또한 권리는 개인적 의지의 적극적 투영이기도 하다. 일체의 개인적 욕망과 욕구는 권리의 언어로 윤색될 수 있다. 부유한 중간 계급에게 권리는 무제한적인 탐욕에 대한 법적이고 공적인 인정과 같은 것이다.<sup>48)</sup> 밀란 쿤데라는 <불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권을 위한 투쟁은 대중화될수록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잃고 마침내 만인에 대한 만인의 공통된 태도가 되었고, 모든 욕구를 권리로 바꿔 놓는 일종의 에너지가 되어 버렸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인권이 되었고, 모든 것이 권리로 바뀌었다 : 사랑의 욕구는 사랑의 권리로, 휴식의 욕구는 휴식의 권리로, 우정의 욕구는 우정의 권리로,

45) 프리모 레비, 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3.

46) 테리 이글턴,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앞의 책, 22쪽.

47) 테리 이글턴,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위의 책, 17쪽.

48) 코스타스 두지나스, “아카디아: 공산주의와 권리들에 대하여”, 슬라보예 지젝/코스타스 두지나스 엮음, 알랭 바디우 외 지음, 진태원 외 옮김, *공산주의라는 이름*, 그린비, 2021, 172-173쪽.

과속으로 달리고 싶은 욕구는 과속으로 달릴 권리로, 책을 출판하고 싶은 욕구는 책을 출판할 권리로, 야밤에 길거리에서 소리지르고 싶은 욕구는 야밤에 길거리에서 소리지를 권리로 바뀌었던 것이다.”<sup>49)</sup>

당연히 이런 권리 주장이 늘어날수록 정작 ‘인권’은 취약해진다.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인권으로서의 임차권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나에게도 ‘당신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다. 형사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고,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테러용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비판하면 안전하게 살 권리(이른바 안전권)가 있다는 반박의 말을 듣게 된다.<sup>50)</sup>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권리들이 모두 인권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인권의 존재 이유 - “정부, 국제기구, 법관 등 공적·사적 권력”과 그들이 내세우는 “불완전한 사회적 가치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와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sup>51)</sup> - 를 생각해야 한다.

인권은 공공의 세계에 참가하여 말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던 자들이 드디어 발화하는 ‘말(=언어)’이다.<sup>52)</sup> 인권은 그들 ‘뭣’ 없는 자들의 저항의 권리이다. 1992년 6월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준식 선생이 이 말을 즐겨했다. 인권은 재산과 위신과 명예, 사회적 평판이 없는 자들의 권리라고. 그것은 경쟁과 독점을 정당화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확대하는 시장지상주의의 통치권력에 저항하는 권리이다. 만약 신자유주의 통치가 이런 인권 개념을 무력화(無力化)하였다면, 인권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보편적 인권’의 관념을 재정립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영국 비판법학의 중심 인물이자 조국 그리스의 국회의원이기도 한 코스타스 두지나스는 근대 이후 ‘인권’ 사상이 승리를 거두고, 해방과 자기실현이라는 계몽주의의 약속이 결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는 극히 비참한 인권침해의 시대를

49) 밀란 쿤데라, 김병욱 옮김, 불멸, 청년사, 1992, 176쪽; 앤드루 클래팸, 이지원 옮김, 앞의 책, 40쪽.

50) 랑시에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은 정치적 급진성과 불온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배자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그린비, 2014, 155쪽.

51) 앤드루 클래팸, 이지원 옮김, 앞의 책, 248쪽에서 재인용.

52)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2011, 인간사랑, 10-11쪽 참고.

살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이 인권침해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통치가 있으므로 인권론의 과제는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지나스는 이러한 상황을 ‘인권의 공리(公理)’로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sup>53)</sup>

“인권의 목적은 공적 및 사적 지배나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다. 인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우상 숭배가 되거나 혹은 문명화 사절(使節)의 현대판이 되었을 때, 인권은 그 목적을 상실하였다.”<sup>54)</sup>

두지나스는 이 공리로부터 6개의 테제를 이끌어낸다. 그 두 번째 테제는 다음과 같다.

“권력과 도덕성, 제국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주권과 권리, 법과 욕망은 숙적(宿敵)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역사상 특정의 권력과 도덕성의 혼합체가 각각의 시대와 사회의 구성질서를 형성한다.”<sup>55)</sup>

나는 이 두 번째 테제에 주목하고 싶다. 인권 이론의 관심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과 도덕성의 혼합체’, ‘사회의 구성질서’에 향해야 하고, 그 질서의 변혁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의 제거를 도모해야 한다. 인권을 말할 때에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소멸을 지향하는 권리라고 무엇의 소멸인가?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 즉 억압적·차별적 ‘사회의 구성질서’의 소멸이고, 그럼으로써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의 소멸이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소멸이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53) 関良徳, “人權論のパラドクスと抵抗への権利 —コストス・ドゥジナスの批判法学—”, 一橋法学 第19巻 第1号, 一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20, 64頁.

54) Costas Douzinas, *The Radical Philosophy of Rights*, Routledge, 2019, 90쪽. 関良徳, 위의 논문, 같은 곳에서 재인용. 한편, “공적 및 사적 지배나 억압에 저항”한다는 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닐 것이다. 기본권과 달리 인권의 목적은 공적 지배나 억압은 물론이고 사적 지배나 억압에도 저항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을 변변히 가로막아서는 자들은 공적 권력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55) Costas Douzinas, 위의 책, 94쪽; 関良徳, 위의 논문, 66쪽에서 재인용.

“생성된 것은 모두, 없어지기에 가치가 있다.”<sup>56)</sup> (1339-1340행)

인권은 재산권과 같은 부르주아적 권리 혹은 ‘보수적 자연권’<sup>57)</sup>과 달리 영구불변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소멸한다면 장애인의 권리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 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00쇄를 찍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sup>58)</sup>의 작가 조세희는 이 책의 출간 30주년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세월이 무섭다. 오늘 행사장 오는 길이 우울하고 쓸쓸해서 혼났다. 30년 감회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다. 한국의 어떤 상황이 <난·쏘·공>을 이리 오랫동안 읽게 했는지 모르겠다. 뜻깊은 날이지만 좀 우울하다.”<sup>59)</sup>

그의 인터뷰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처럼 작가는 그의 책이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결국 소멸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 소멸이 ‘난·쏘·공’ 주체들의 새로운 생성과 출발을 의미하게 되기를 염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빈민을 둘러싼 억압의 ‘사회 구성 질서’는 공적 권력 주도에서 사적 권력 주도로 재편되며, 더욱더 공고해졌다.

1970년대 ‘난·쏘·공’의 억압자가 구청 등 국가권력이었다면, 21세기 ‘난·쏘·공’의 억압자는 배후로 후퇴한 공적 권력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전면에 등장한

56) 원문은 “alles, was entsteht, Ist wert, daß es zugrunde geht”이다. <파우스트> 번역본마다 이를 각각 다르게 옮기고 있다. 예컨대 “모든 생겨나는 것은/ 멸망할 가치가 있으니까요.”(전영애), “생성하는 모든 것은 멸망하게 마련이니”(정서웅), “생겨나는 모든 것은/ 멸망하기 마련이니 말입니다.”(김수용) 본문의 표현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이 말을 인용한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우리 말로 번역한 박홍규 교수의 번역이다. 루돌프 폰 예링, 박홍규 옮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문예출판사, 2022, 46쪽; 심재우·윤재왕 번역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번역도 유사하다. “생성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사멸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루돌프 폰 예링, 심재우·윤재왕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새물결, 2016, 40쪽.

57) 에른스트 블로흐는 자연법이 도전적·진보적일 수도 있고, 현상유지적·보수적일 수도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진보적 자연법은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며, 그 현실의 변화를 요구한다. 반대로 현상유지적 자연법은 보수적이며, 현존질서를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옮김,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열린책들, 2011, 12쪽 등.

58)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개정판, 이성과 힘, 2024.

59) [인터뷰] <난·쏘·공> 출간 30주년 기념 작가 조세희 - 조세희, “젊었을 때 아나키즘에 빠졌던 것 같다”, 오마이뉴스, 2008. 11. 18일자.

사적 권력이다. 부르주아 계급/중산층은 탐욕스러운 재개발 ‘권리’를 앞세워 도시 빈민의 ‘주거인권’을 침해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묵인했다. 그러므로 ‘난·쏘·공’의 성공은 30년 그리고 그 이상 지속된 “한국의 어떤 상황” ‘덕’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작가의 우울은 그로 인해 더욱더 심화되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졌다. ‘난·쏘·공’이 계속해서 읽힌다는 것은 도시민 주거권 침탈사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역사라는 것을 환기한다.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문학으로 읽는 인권’ 수업에서 말하는 인권은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의 논리를 개인주의적 권리 담론으로 좁혀버릴 위험이 있다. 개인주의적 권리 담론은 인권의 문제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치환해 버리기 일쑤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이들의 책임과 역할은 논의에서 사라진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의 문제는 어떤 사안이 현상적으로는 우연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가해와 피해 문제로 등장하더라도 항상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구조를 인식하고, 그 사건을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인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문학작품은 이 점을 붙들고 늘어진다. 그리스 비극이 그러하지 않은가? 한 (영웅적)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족’ 혹은 ‘공동체’의 운명 같은 것 말이다. 그 비극의 전통을 이어 받은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를 읽어보라.<sup>60)</sup> 이 소설의 제목이 왜 그냥 ‘테스’가 아니고 ‘더버빌가’의 테스겠는가!

### 3. ‘읽는다는 것’의 의의

‘문학으로 읽는 인권’ 강의는 문학을 보조재료로 삼아 인권 ‘법’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의 부정의를 논하고 정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혹은 다른 말로,

60) 테스의 생애는 행운이 아니라 불운이 지배한다. 이 비극은 숙명이라는 점에서 그리스 비극을 닮았다. 그리스 비극의 세계에서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포클레스, 천병희 옮김,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외, 문예출판사, 2006, 407쪽(안티고네 1338행). 테스의 비극은 그의 아버지가 동네 신부에게서 당신은 “유서 깊은 기사 가문 더버빌가의 직계 후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작된다. 하디는 그녀의 비극이 선조가 저지른 잘못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소설 안 여기저기에서 되풀이 묘사한다. 특히 그녀가 알렉 더버빌에게 강간 당한 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작가가 덧붙인 서술을 참고할 것. 토마스 하디, 유명숙 옮김, 더버빌가의 테스, 문학동네, 2011, 115쪽.

현재 불가능하고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정의에 어떻게 가 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업이다. 이것은 “공적 및 사적 지배나 억압에 저항하는 것”에서 인권의 목적을 찾고, 공적·사적 권력과 그들이 내세우는 불완전한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거둬들이고, ‘없는 자’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얘기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문학으로 읽는 인권은 법과 문학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법의 시선에서 문학을 읽는다. 그러나 그 시선은 방금 말한 바로 그 인권의 시선이어야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와 같은 실무 법률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검사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다.<sup>61)</sup> 현직 검사인 양중진이라는 사람이 “고전 <삼국지>를 대한민국의 법률로 재해석한 저작이다. 도원결의부터 공명의 죽음까지 <삼국지>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하여 풀어내고 있다.”(알라딘 책소개) 시중에 이런 책은 적지 않다.<sup>62)</sup> 나는 이런 책이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쓸모 있기는커녕 오히려 대중의 법의식을 왜곡할 수 있다. 삼국지를 소재로 현행 법률을 설명하면, 예컨대 중고등학생들은 세상은 언제나 법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 철학적으로 말해 법률신주의에 빠질 수 있다.

법률신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법률가들이 문학작품을 소재로 법률적 사례풀이를 즐길 때 그들은 반드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에 간 걸리버가 소변으로 왕궁의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이 있다. 왕궁에서는 그 누구도 배뇨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sup>63)</sup>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걸리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걸 법률가들이 의례 던질 법한 질문이지만, 이런 사고를 잘 할 줄 아는 것을 두고 ‘리절마인드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리절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다.<sup>64)</sup> 이런 ‘잔재미’에 빠지면 정작 해당 소설이 담고 있는 정치적 풍자와 시대 비판을 읽어낼 수 없다.

61) 양중진, *검사의 삼국지*, 피팅포인트, 2018.

62) 이재원 변호사는 유아교육 전문 출판인과 함께 작업한 <변호사와 함께 보는 옛이야기 명판결> 시리즈(전 3권)를 이미 2000년에 출간한 바 있다.

63) “그 나라의 기본법에 의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궁궐 내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중죄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 나는 재판부에 명령을 내려 공식적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황제의 전갈을 받고서야 다소 안심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 사면을 얻지 못했다.” 조너선 스위프트, 류경희 옮김, *걸리버 여행기*, 더스토리, 2020, 93-94쪽.

64) 리절마인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이계수,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민주법학* 제5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485-516쪽.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중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잔느의 남편 줄리앵은 정신 못차리고 다시 푸르빌 백작 부인과 바람을 피는데, 이를 알게 된 푸르빌 백작이 이 둘을 응징한다. 노르망디 바닷가 절벽 위 양치기용 이동식 오두막 안에서 밀에 중이던 두 사람에 격분한 백작은 괴력을 발휘하여 절벽 아래로 오두막을 밀어버린다. 오두막은 “달걀처럼 산산조각”<sup>65)</sup>이 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검사의 삼국지> 저자라면 이 대목에서 백작의 살인죄니 뭐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톨비악 신부의 ‘고자질’이 살인교사(敎唆)죄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을 논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학으로 읽는 인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법적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에피소드가 깔고 있는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여성의 지위와 인권 상황이다.

당시 프랑스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취약했다. 어려서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살다가,<sup>66)</sup> 결혼에서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되었다가,<sup>67)</sup>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제는 집안의 중심이 되고, 남편 사후에는 자식에게 그저 끌려만 다닌다.

실제로 잔느는 결혼 후에 남편인 줄리앵이 자기 재산도 관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본다.<sup>68)</sup> 게다가 <여자의 일생>에서 두 번이나 문제가 된 남편의 외도를 잔느는 못본척 해버린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19세기 프랑스 재산법과 이혼법을 알아야 한다.<sup>69)</sup>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것은 두 불륜남녀의 사망후 백작이 체포되거나 주위 사람으

65) 기 드 모파상, 이동렬 옮김, 여자의 일생, 민음사, 2014, 264쪽.

66) “이론가인 그는 자기 딸을 위해 교육 방침을 전부 짜서, 딸을 행복하고 선량하며 올바르게 다정하게 키우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열두 살 때까지 집에 머무르다가, 그 후에 어머니가 울며 반대했음에도 성심 수녀원에 맡겨졌다.” 기 드 모파상, 이동렬 옮김, 위의 책, 11쪽.

67) “앞으로 행복을 맡아 줄 남자의 품안으로 부모가 넘겨줄 때까지는, 딸들은 순결한 정신으로, 완전무결하게 순결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이것만은 결코 잊지 마라, 너는 네 남편에게 완전히 속한다는 사실 말아야.” 기 드 모파상, 이동렬 옮김, 위의 책, 82-83쪽.

68) 이것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에 등장하는 두 딸이 처해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이계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 <민주법학>의 시선, 민주법학 제8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405-406쪽.

69)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이혼은 자유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이혼은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대폭 수정되었다가 1816년 5월 8일 보날(Bonald)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로부터 약 70년 후인 1884년 7월 27일 나케(Naquet)법을 통해 이혼이 민법에 재규정되기까지 19세기 내내 프랑스는 이혼이 불가능한 사회였다. 자세한 것은 이계수, 위의 논문, 408-410쪽. 바로 이런 시대, 특히 왕정복고기였던 1819년 5월에 이 소설은 시작되어 대략 1848년까지 이어진다. 이혼이 불가능한 사회였으므로 잔느는 남편의 외도를 그저 눈감고 못본척할 수밖에 없었다.

로부터 의심받는 장면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사망 이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잔느도 이에 대해 입도 떼지 않는다. 잔느가 쥘리앵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사산(死産)까지 했고 이 일로 일종의 신경병도 얻었다고 묘사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잔느는 쥘리앵의 죽음에 대해 결코 상세한 것을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녀는 충분히 알지 않는가? 모두들 사고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간통 사실의 인지, 백작의 그 갑작스럽고 무서웠던 방문, 바로 **그날 닥친 재난** 등. (...) 모든 결점은 줄어들고, 모든 몰인정함은 사라지고, 거둬들인 불충실까지도 닫힌 무덤이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이제는 희미해져갔다.”<sup>70)</sup> (강조는 필자)

잔느는 왜 그랬을까?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부정(不貞)을 저지르는 장면을 봤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래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간통이어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랐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의 간통 현장을 ‘잡은’ 경우, 아내를 어떻게 할지는 그의 자유였다. 극단적으로는 살해해도 죄를 묻지 않았다. 반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잡더라도 남편을 죽여 버리면 죄를 묻는다. 이처럼 당시 프랑스에서는 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남녀에서 법률상의 제재가 달랐다.<sup>71)</sup>

그러므로 푸르빌 백작이 자신의 아내와 쥘리안을 죽여 버렸을 때, 잔느는 그가 범인임을 짐작하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것이다.<sup>72)</sup>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법이었다. 푸르빌 백작의 살해 행위가 정확히 당시 형법 제32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인가, 즉 노르망디 바닷가 절벽 위가 가령 백작의 영지라고 보고, 이런 경우도 자기 집에서 불륜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여기서 더 논하지 말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은 불륜을 저질러도 혹은 불륜의 결과 원치 않은

70) 기 드 모파상, 이동렬 옮김, 앞의 책, 270쪽.

71) 자기 집에서 불륜 현장(en flagrant délit)을 ‘적발한’ 경우 당시 프랑스 형법 제324조는 남편에게 두 남녀를 살해할 권리를 부여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물었다. H. D. Lewis,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nineteenth-century France”, *Journal of European Studies*, x, Area Study Centre for Europe, 1980, 183쪽.

72) 푸르빌 백작이 간통 남녀에 대한 살해권을 행사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일본의 불문학자 오구라 코세이(小倉孝誠)의 해설에 따른 것이다. “モーパッサン 『女の一生』から学ぶ女性の生き方”, <https://www.ziel-magazine.com/unevie01/>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건 오로지 여성뿐이었다는 사실이다.<sup>73)</sup>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여 사형당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파우스트>는 18세기 당대의 유럽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닌가? 물론 19세기가 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나아진 거라면 나아진 걸까?<sup>74)</sup> 남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여성만 사형에 처하는 극도의 부정의는 조금은 완화된 형태로 19세기 내내 20세기 전반기까지 지속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역사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문학으로 읽는 인권이 읽어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현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분투하는 인물들의 투쟁이다. 당대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법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말이다.

나아가 문학을 읽으며 법의 불가능성을 사유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런 식의 “좌파적이고 리버럴한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찬”<sup>75)</sup> 시각으로 법과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반박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다. 일례로 포스너는 문학을 매개로 한 탈구축의 시도, 즉 종래 자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근대법의 제 전제 및 이념을 의심하고 해체하는 것은 법률을 소재로 한 반체제적인 담론 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법과 문학 연구’가 아니라 법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일 뿐이라고 말한다.<sup>76)</sup>

포스너는 위와 같은 ‘좌파적’ 시도는 물론이고 문학이 법률가를 윤리적(도덕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스바움 류<sup>77)</sup>의 리버럴한 생각마저도 비판의 대상

73) 기원전 18년에 제정된 ‘간통에 관한 율리우스법’(Lex Iulia de Adulteriis) 혹은 ‘간통 금압에 관한 율리우스법’(Lex Iulia de Adulteriis Coercendis)은 간통을 가내(家内) 문제가 아닌 국가권력으로 다스려야 할 공(公)범죄로 규정하였다.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이 율리우스법은 남편에 의한 간통녀 살해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자신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상간남을 죽이는 외에 자신의 아내도 죽일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는데 통설적 견해는 남편의 아내 살해권을 부정하였다. 로마법의 남녀 차별적 태도 – 간통을 여성의 죄로 보아 여성이 죄인인 한에서 상간남을 죄인으로 취급 – 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로마법에서도 간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살해권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 남성현, “로마법과 기독교 – 간통 및 이혼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4-6세기 기독교 시대의 칙법 전통”, 서양고대사연구 제29집,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11, 195-260쪽. 특히 203-206쪽.

74)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은화 옮김, 재판, 해냄, 2003, 103쪽.

75) Richard Posner, *Law and Literature*, 3판,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쪽.

76) Richard Posner, 위의 책, 9-10쪽.

77)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 외에도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Jane B. Baron/Julia Epstein, “Language and the Law: Literature, Narrative, and Legal Theory”, David Kairys(Ed.), *Politics of Law: A Progressive Critique*, 3판, Basic Books, 1998, 662-664쪽.

으로 삼는다. 그는 문학의 효용은 법학적인 통찰력, 수사적인 표현기술, 문학작품에 대한 법적 규제의 이해, 법이 직면한 사회관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까지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문학이 법률가를 인간적으로 만듦으로써 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잘라 말한다.<sup>78)</sup>

그러나 나는 이런 비판에 맞서고 싶다. ‘문학 속의 법’(law in literature)이 되었던 ‘문학으로서의 법’(law as literature)이 되었던 법연구자에게 문학은 법 ‘개혁’을 향한 어떤 열망을 자극하며, 법의 근본문제들, 법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를 재사유하고 점검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포스너는 이런 식의 독서는 텍스트에 대한 오독에 불과할 뿐이라고 재반박할 것이지만, 텍스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여러 의미 가능성을 발굴해내고 유희하는 것은 즐거운 오독이라고 해야 한다.<sup>79)</sup>

#### IV. ‘커머닝’으로서의 독서 활동과 ‘문학의 정치’

‘오독’은 먼저 이야기 속에 감춰진 화자를 찾는 작업에서 시작할 수 있다. 소설 <제인 에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했던 다락방의 미친여자 버사로 하여금 자기 얘기를 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한다.<sup>80)</sup> 나아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 혹은 엑스트라의 시선에서 사물을 읽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셸 투르니에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sup>81)</sup>이라는 작품에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 즉 자기와 타자라는 이항대립의 틀 안에 들어 있는 타자인식의 허구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또한 굳이 법률가가 아니어도, 피르소의 살인행위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받아든다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sup>82)</sup>

78) Richard Posner, 앞의 책, 7쪽.

79) 이계수,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 민주법학 제6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143쪽.

80) “중이는 사람보다 참을성 있게 듣는다.” 안네 프랑크, 배수아 옮김, 안네의 일기, 책세상, 2021, 16쪽. 한편, ‘다락방의 미친 여자’는 샌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가 공저로 출간한 책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화와 삶의 모든 면에 미치는 가부장제의 영향력에 페미니즘적 사유가 온 관심을 쏟았던 1970년대 끝머리, 그러니까 1979년에” 처음 출간되어 이 분야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옮김, 다락방의 미친 여자, 북하우스, 2022, 11-12쪽(보급판 서문).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제인 에어> 등 살롯 브론테의 작품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분석하고 있다.

81) 미셸 투르니에, 김화영 옮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민음사, 2003.

아무튼, 오독이든 다르게 읽기든 일단은 읽는 일이 먼저다. 많은 이가 그렇게 생각 하듯이 나도 책 읽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나만의 골방이라고 생각한다.<sup>83)</sup> 그러나 문학 읽기가 혼자만의 ‘즐거운 오독’으로 끝나지 않고 인권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골방에서 나올 용의가 있다.<sup>84)</sup>

나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만의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나와 ‘문학으로 읽는 인권’ 함께 읽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독서와 토론은 우리들을 공적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릴 때의 독서와 성인이 되어 읽을 때의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경험이 그러하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읽는 책 모두에 독특한 흥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게 마련이다. 반면 성인이 되어 읽으면 더욱 세밀한 부분과 다양한 면모, 또 그 의미를 감상하게 된다.”<sup>85)</sup> 그래서 칼비노는 “고전이란 그것을 읽고 좋아하게 된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지만,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만이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86)</sup>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란 더욱 세밀한 부분과 다양한 면모와 의미를 감상할 수 있는 역량과 연결된다. 그 역량은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집합체 속의 인간’(men in the aggregate)의 문화적 상상력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sup>87)</sup>

예컨대 우리는 그림 형제의 동화를 함께 읽고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나 “개인의 무의식이나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채 기억의 지층 안에 숨어”<sup>88)</sup> 있는 공동체적 삶과 인권의 조화가능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sup>89)</sup> 이것을 일단 ‘커머닝(communing)으로서의 독서 토론’이라고 해두자.

Commons라는 단어는 통상 공유지, 공유재, 공동자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82) 카멜 다우드, 조현실 옮김, 피르소, 살인사건, 문예출판사, 2017.

83) 책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장미의 이름>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15세기 독일 신학자 아캠퍼스의 다음과 같은 명언을 인용한다. “내 이 세상 도처에서 설 곳을 찾아보았으되,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 움베르토 에코, 이윤기 옮김, 장미의 이름 (상), 열린책들, 2000, 23쪽.

84) 한디디, 커먼즈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빨간소금, 2024, 17-19쪽 참고.

85) 이탈로 칼비노, 이소연 옮김, 왜 고전을 읽는가, 민음사, 2008, 11쪽.

86) 이탈로 칼비노, 이소연 옮김, 위의 책, 같은 곳.

87) 아미타브 고시, 김홍옥 옮김, 대혼란의 시대, 예코리브르, 2021, 106-108쪽 참고.

88) 이탈로 칼비노, 이소연 옮김, 앞의 책, 12쪽.

89) 그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필자의 다음 글을 참고하라. 이계수, “동화와 법”, 일감법학 제4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28-152쪽. 특히 139-147쪽.

최근에는 음역인 ‘커먼즈’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이 개념, 단어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해 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커먼즈를 커머닝(commoning, 공통화하다)으로 보게 되면, ‘커먼즈=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커먼즈는 활동이자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토니오 네그리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s)은 “너와 내가 무언가를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며 “무언가를 함께하는 활동 그 자체”라고 말한다.<sup>90)</sup> 물론 ‘커머닝으로서의 독서’가 가능하려면 그에 합당한 물질 토대도 필요하다.

사실 자유, 정치적 삶, 시민의 삶, 즉 내가 말해온 “공적 행복”은 ‘사치’다. 공적 행복이란 우리가 삶의 과정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 후에야 이를 수 있는 ‘부가적’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적 삶을 얼마나 바꿔야 하는가? 다른 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공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교육은 아주 훌륭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돈이다. 이들은 공적 삶을 누릴 수 있을 때야 공적 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아직 시민이 아닌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삶의 과정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이상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상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시민이 되게 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공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사적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것**을 포함한다.<sup>91)</sup> (강조는 필자)

아렌트가 말한 “공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적 삶의 환경” 중 하나가 커먼즈가 아닐까? 이를테면 ‘노동자 독서 조직’, ‘민중의 집’ 같은 것 말이다.<sup>92)</sup> 이런 커먼즈를 확보하고, 커머닝으로서의 독서 ‘활동’을 조직해 나가는 것은 ‘문화자본’(피에르 부르디외)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동자·민중의 삶에 아주 필요하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밤’(자크 랑시에르)을 위해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선거 슬로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다.<sup>93)</sup> “사람이 먼저다”와 같은 구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저녁이 있는

90) 한디디, 앞의 책, 15-16쪽.

91) 한나 아렌트, “공적 권리와 사적 이익 - 찰스 프랭클에 대한 답변”,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앞의 책, 721-722쪽.

92) 정경섭, 민중의 집 - 술과 이웃, 토론과 배움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 레디앙, 2012. 한디디, 앞의 책, 173쪽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 “함께 살림하기를 통한 집/가족의 커머닝, 빈집” 사례로 참고할 것.

93) 2012년 손학규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대통령 선거)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삶이 가능해야 소설이든 시든 읽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인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무언가를 읽고 쓰며, 자신과 동료 인간들에게 공통된 “공공선”(public good),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공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책을 읽고 쓸 시간과 자유, 누구나 읽고 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결국 우리를 ‘문학의 정치’로 이끈다. 문학의 정치란 작가가 행하는 정치활동이라든가 작품이 품고 있는 정치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문학은 문학으로서 정치를 행한다.’<sup>94)</sup>

문학의 정치성이라고 하면 문학이 정치에 복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문학의 사명은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참여에 있다’고 주장한 사르트르가 대표적이다.<sup>95)</sup> 그러나 랑시에르는 문학과 정치가 다르다는 생각, 문학이 정치에 복무 혹은 종속해야 한다는 테제와 이별하고, 문학 그 자체에는 고유의 정치성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역설적 테제를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론과 ‘감성적인 것의 분할=분배’에 관한 논의를 설명해야 하지만 강의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다만,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에게 정치란 기존의 분할=분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분할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행위로 이해된다. 가령 지금까지 ‘노동’ 외에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져왔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해온 노동자들이 내일의 노동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쉬어야 할 야간과 휴일의 시간을 쪼개어 읽고 쓰기라는 독자의 활동을 시작할 때 분할=분배의 모습이 바뀌고 정치가 시작된다. 이것은 랑시에르가 자신의 초기(1981) 저작인 <프롤레타리아의 밤> 이래 일관되게 말해온 관점이다.<sup>96)</sup>

노동자의 자리에 학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대학 입시) 공부 외에 시간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해온 학생들이 ‘학원의 밤’을 쪼개어 독자의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되고 있다. 이제 학생 인권을 구원할, 학생 아닌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은 학생인권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다. 감성적인 것을 분할해온 기존의 경계선

94)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앞의 책, 9쪽.

95) 장폴 사르트르, 정명환 옮김,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417쪽(작품해설).

96) ジャック・ランシエール, 森本淳生 訳, 文学の政治, 水声社, 2023, 380-381頁(記者解題).

을 교란하며 새로운 선긋기에 나서야 할 정치의 행위자는 바로 그들이다. 다음 번 강의 주제인 “문학으로 읽는 학생 인권”에서는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이어가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기 드 모파상, 이동렬 옮김, 여자의 인생, 민음사, 2014.
- 루돌프 폰 예링, 박홍규 옮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문예출판사, 2022.
- 미셸 투르니에, 김화영 옮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민음사, 2003.
- 밀란 쿤데라, 김병욱 옮김, 불멸, 청년사, 1992.
- 박희병, 한국고전문학사 강의 1, 돌베개, 2023.
- 백민석, 헤밍웨이, 아르테, 2018.
-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옮김, 다락방의 미친 여자, 북하우스, 2022.
- 소포클레스, 천병희 옮김,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외, 문예출판사, 2006.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 슬라보예 지젝/코스카스 두지나스 엮음, 알랭 바디우 외 지음, 진태원 외 옮김, 공산주의라는 이념, 그린비, 2021.
-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아미타브 고시, 김홍옥 옮김,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 안네 프랑크, 배수아 옮김, 안네의 일기, 책세상, 2021.
-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옮김,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열린책들, 2011.
- 앤드루 클래팜, 이지원 옮김, 인권, 교유서가, 2019.
-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중인 옮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상), 열린책들, 2012.
- 움베르토 에코, 이윤기 옮김, 장미의 이름 (상), 열린책들, 2000.
- 이탈로 칼비노, 이소연 옮김, 왜 고전을 읽는가, 민음사, 2008.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 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옮김, 프롤레타리아의 밤 - 노동자의 꿈 아카이브, 문학동네, 2021.
- 장폴 사르트르, 정명환 옮김,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 정경섭, 민중의 집 - 술과 이웃, 토론과 배움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 레디앙, 2012.
-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그린비, 2014.

- 조너선 스위프트, 류경희 옮김, 걸리버 여행기, 더스토리, 2020.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개정판, 이성과 힘, 2024.
- 카멜 다우드, 조현실 옮김, 피르소, 살인사건, 문예출판사, 2017.
- 케이트 밀렛, 김유경 옮김,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 키쓰 바튼/리칭 호, 웅진환/장유정/김진아 옮김, 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정의와 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역사비평사, 2023.
- 토마스 하디, 유명숙 옮김, 더버빌가의 테스, 문학동네, 2011.
- 테리 이글턴,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문학이론입문, 창비, 1989.
-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 한나 아렌트, 신충식 옮김, 난간 없이 사유하기 - 한나 아렌트의 정치 에세이, 문예출판사, 2023.
- 한디디, 커먼즈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빨간소금, 2024.
- D. H. 로렌스, 이인규 옮김,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민음사, 2003.
- ジャック・ランシエール, 森本淳生 訳, 文学の政治, 水声社, 2023.
- Bernd Guggenberger/Ulrich K. Preuß/Wolfgang Ullmann, *Eine Verfassung für Deutschland: Manifest Text Plädoyers*, München, 1991.
- Costas Douzinas, *The Radical Philosophy of Rights*, Routledge, 2019.
- Georg Nolte(Ed.),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Berlin, 2003.
- Richard Posner, *Law and Literature*, 3판,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2. 학술지

- 김경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 - 문학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제14권,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51-163쪽.
- 김양선,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비교한국학, 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15-36쪽.
- 남성현, “로마법과 기독교 - 간통 및 이혼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4-6세기 기독교 시대의 칙법 전통”, 서양고대사연구 제29집,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11, 195-260쪽.
- 이계수 번역, “외국판례소개: 국민의 이름 - 독일 판례”, 민주법학 제2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362-375쪽.

- \_\_\_\_\_,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제2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311-336쪽.
- \_\_\_\_\_, “동화와 법”, 일감법학 제4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28-152쪽.
- \_\_\_\_\_,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 민주법학 제6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135-167쪽.
- \_\_\_\_\_,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민주법학 제5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485-516쪽.
- \_\_\_\_\_,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 <민주법학>의 시선”, 민주법학 제8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397-468쪽.
- \_\_\_\_\_,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민주법학 제6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1-35쪽.
- 高橋正雄, “闘病文学としての『アミエルの日記』”, 日本病跡学雑誌 第70号, 日本病跡学会, 2005, 70-78頁.
- 高野泰志, “マリアの凌辱 - 『誰がために鐘は鳴る』における性と暴力”, 九大英文学 第51号, 九州大学大学院英語学・英文学研究会, 2009, 25-35頁.
- 関良徳, “人権論のパラドクスと抵抗への権利 - コスタス・ドゥジナスの批判法学 -”, 一橋法学 第19巻 第1号, 一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20, 63-81頁.
- H. D. Lewis,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nineteenth-century France”, *Journal of European Studies*, x, Area Study Centre for Europe, 1980, pp.178-188.

[ Abstract ]

## Menschenrechte in der Literatur

### – Sinn, Fall und Methode –

Yi, Kyesoo<sup>\*</sup>

Seit den 1970er Jahren ist „Law and Literature“ vor allem in den Vereinigten Staaten als Teil der Bewegung der kritischen Rechtswissenschaft entstanden.

Seitdem hat sich das Studium der Rechts- und Literaturwissenschaften in verschiedene Richtungen entwickelt, aber in jüngster Zeit, da das Interesse an diesem Bereich selbst in den Vereinigten Staaten zurückgegangen ist, verleihen Versuche, Literatur und Menschenrechte zu verbinden, der Forschung auf diesem Gebiet neue Dynamik.

Inspiziert von diesem Forschungstrend beschreibt dieser Aufsatz den Sinn und die Methode der Lektüre von Menschenrechten anhand von Literatur. Darüber hinaus wurde anhand des Themas „Menschenrechtserziehung und Recht auf Literatur von Soldaten“ gezeigt, dass das Lesen von Menschenrechten anhand von Literatur tatsächlich eine wirksame Menschenrechtserziehung sein kann.

Abschließend wurde die kritische und menschenrechtliche Lektüre literarischer Werke mit „Mitbürgern“ als eine Art „Commoning“ verstanden und die Bedeutung des Kampfes um Zeit und Freiheit für die Lektüre von Büchern hervorgehoben.

[Key Words] Recht und Literatur, Menschenrechte in der Literatur, Recht auf Literatur, Menschenrechtserziehung, Bürgererziehung, Menschenrechtserziehung für Soldaten, Geschlechtersensibilität, Politik der Literatur

---

<sup>\*</sup>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